

#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937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1. .  
제 출 자 김 계 순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및 보상금 지급을 위한  
의원의 직무범위 규정 삭제.

## 2. 주요내용

가. 보상금 지급을 위한 의원의 직무 범위 중 일부 제한이 있던 사항이 삭  
제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: 「지방자치법」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생략

나) 예고결과 :

### 2) 부서협의

가) 협의기간 : 해당없음

나) 협의결과 :

3)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##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”로, “절차등”을 “절차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의정자료”를 “의정 자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”를 “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경우 : 사망당시”를 “경우 : 사망 당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김포시의회의 장”을 “김포시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보상금은”을 “시장은 보상금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시장이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의회의원중”을 “시의회 의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 관련”을 “김포시 본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회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 한다.

### 3. 의무직 또는 의료전문직 공무원 1명

제14조제2항 중 “김포시소속공무원중”을 “김포시 소속 공무원중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위원 중 김포시 공무원”으로, “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”을 “수당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김포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<u>절차등</u>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정의)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직무”라 함은 김포시의회의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(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 “의정활동비”라 함은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「김포시의회의원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</p> <p>3. “유족”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 <u>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절차 등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①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 제&gt;</p> <p>1. ----- <u>의정 자료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2. ----- <u>사</u>  <u>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</u> -----</p>

있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를 말한다.

제6조 (보상금의 청구)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직무로 인한 사망, 직무상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: 사망 당시의 유족

2. (생략)

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김포시의회의장 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을 경유하여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

제8조 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.

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.

제9조 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)

① (생략)

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

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경우 : 사망 당시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김포시의회의 의장-----  
-----.

제8조(보상금의 지급방법) ① 시장은 보상금을 -----  
-----.

② 시장이 제1항-----  
-----.

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의회의원중 1명

2. 시 관련 국장, 담당관, 과장 1명

3. 의무직 공무원 1명

4. (생략)

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심의회의 간사) ① (생략)

②간사는 김포시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15조 (심의회의 수당등)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시의회 의원 중 -----  
-----

2. 김포시 본청 -----

3. 의무직 또는 의료전문직 공무원 1  
명

4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의원  
-----  
-----.

제14조(심의회의 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 김포시 소속 공무원중----  
-----.

제15조(심의회의 수당등) -----

---- 위원 중 김포시 공무원----

----- 수당----

-----  
-----  
-----.